

5. 國有財產法施行令中改正令(案) 立法豫告

재정경제원공고 제1997-49호 1997. 6. 5

주요 골자

- 가. 재개발지구내 국유지 점유자중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에 대해서 매각대금의 분납이자율을 현행 8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인하하도록 함.
- 나.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시장재개발사업지구내 국유지에 대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함.
- 다. 정부소유주식의 처분을 당해 주식발행기업체 또는 정부출자기업체인 금융기관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도록 함.
- 라. 기타 경작목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하거나 또는 집합건물의 일부를 사용·수익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함.

개정 이유

재개발지구내 국유지 점유자중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에 대하여 매각대금 분납이자율을 인하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민원해소를 도모하고,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택회보